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다음 연도 2월말 → 당해 연도 12월 31일)되고, 결산서 의회 제출시한이 단축(6월 30일 → 5월 10일)되는 등 결산순기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며,
-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사무 처리기관 중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의 법인명칭 변경(2014. 7. 23.)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4. 6. 30일자로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함(안 제2조제3호)
- 나. 전년도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한 제1차

정례회는 결산순기를 감안하여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새해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적정 심사기간을 확보하여 법정의결시한(12.16.) 전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인천영상위원회를 추가하고,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의 법인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마. 결산순기가 내년 상반기부터 조정되므로 개정규정 중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5, 팩스 032-440-8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셋째주”를 각각 “둘째 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차목 중 “(사)인천도서관협회”를 “(사)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인천영상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제2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약칭) 본문 (생략) 1.~2. (생략) 3.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u><u>다</u>)을 말한다. 4.~8. (생략)	제2조(약칭) 본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u>삭 제</u>) ----- ----- -----. 4.~8. (현행과 같음)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생략)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셋째주</u> 화요일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u>셋째주</u> 화요일 ② (생략)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현행과 같음) 1. ----- <u>둘째 주</u> ----- 2. ----- <u>둘째 주</u>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문화복지위원회 가.~자. (생략)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문화복지위원회 가.~자.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차. <u>(사)인천도서관협회</u> 사무에 속하는 사항 <u><신 설></u> 4.~6. (생략)	차. <u>(사)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u> -- ----- 카. <u>(사)인천영상위원회</u> 사무에 <u>속하는 사항</u> 4.~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령 ○ 제44조(정례회),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 지방재정법 / 시행령 ○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부칙 ○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부칙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세부사항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칙 <제12687호, 2014.5.28.>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781호, 2014.11.28.>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되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 가. 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를 제외한다),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카.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 타.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 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 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